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916
----------	------

제출년월일 : 2024년 5월 2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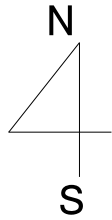
가.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전태일기념관)은 한국노동운동사의 중요한 기점을 마련한 노동운동가 전태일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시설로, 노동 존중 가치를 확산시키고 시민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시의 문화 및 집회시설임.

나.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형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을 통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사업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에 의거 서울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전태일기념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관수동 152-1)
- 시설규모 : 지상6층, 연면적 1,919.53㎡/대지면적 553.1㎡
- 개관일 : 2019. 4. 30.
- 수탁자 : 재단법인 전태일재단
- 위탁기간 : '21. 8. 6.~'24. 8. 5.(재계약 1차, 3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4항에 의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86일 연장('24.8.6.~'24.10.31.)
- 이용대상 : 시설 방문객 모두(제한없음, 무료)



시설 위치도

(S=1:10,000)

범례	



지역 여건 **탑골공원 남쪽 청계천 수표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로3가와 을지로 3가의 중간에 위치하여 시민 접근성이 뛰어남**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4. 11. 1. ~ '27. 10. 31.)
- 위탁사무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관리 총괄
 - 전태일기념관 전시 및 운영, 홍보 및 교육, 문화공연 운영
 - 기타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소요예산 : 1,316백만원('24년 예산편성액)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공공운영비	민 간 위 탁 금				민간위탁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일반관리비	
2024년	1,316	1	797	155	300	15	48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재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라.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운영경과

- `17.4.20. 노동복합시설 운영 기본계획 수립(노동정책담당관-4206)
- `17.9.6. 노동복합시설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제276회 임시회)
- `18.1.26.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
- `18.8.3.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위·수탁 협약 체결
 - 위·수탁기간 : `18.8.6. ~ `21.8.5.(최초)
- `19.4.30.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개관(종로구 관수동 152-1)
- `21.8.4.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재계약 체결

마.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올바른 노동환경 인식과 노동문화 개선을 위한 장기·지속적인 노동문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고, 전시·교육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전문인력과 민간 네트워크 등 관련 인프라를 보유한 민간 전문기관의 역량이 필요함
- 이에 공모를 통해 전태일 및 전태일의 노동운동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념관 운영 전문성 등이 검증된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바. '24년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3조에 따른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복지시설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2024년 제1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결과 제출

※ 작성자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권오상 (☎ 2133-5428)